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63
----------	------

발의연월일 : 2025년 10월 일

발의자 : 금광연 의원

1. 제안이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담, 서류 작성 지원, 행정업무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운영(안 제3조)
- 역할(안 제4조)
- 위촉 및 해촉(안 제5조~제6조)
- 지원대상 및 상담방법(안 제7조~제8조)
- 상담결과 관리 및 지원(안 제9조~제11조)
- 포상(제12조)

3. 제정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행정사법」 제4조, 제10조, 제25조의4 및 제26조의3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5.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5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필한 행정사 중에서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 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 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1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 회 하남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으로 한다.

제8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사무소의 외부에서 출장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상담 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담료) 제8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지원)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나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 9. 생략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①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인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조의5. ~ 26조의2 생략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25. 09. 17.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고
1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2024-11-12	자치행정과	
2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7-01	자치분권과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2024-03-28	자치행정과	